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경동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항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,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4조의2)
 -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시설물의 안전점검
 - 적용범위 :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이상인 공동주택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